



제418회국회(정기회)
제7차기획재정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4741호)

2024. 12.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박성훈의원안)	3

I. 개요

1. 박성훈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4741호)

가.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성훈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10. 17.

(3) 회 부 일 : 2024. 10. 18.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 일반적으로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에 대해서는 시세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업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상속세 부담으로 기업인들의 경영의지가 위축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기업의 투자 및 고용 활동이 저해되며 상속세 납부 여력이 없는 기업은 경영권, 지분 매각 등으로 기업 승계를 포기하게 되고 이는 해외 투기자본에 노출 위험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음.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나, 경영권 프리미엄의 크기는 경영 실적, 대외 위험도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현행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해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과세하는 것은 과세근거가 취약함.

뿐만 아니라, 가업승계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 고유의 기술·경영 노하우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적 성장과 고용 창출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은 창업세대 고령화로 다음 세대에 기업을 승계해야 하는 중요한 전환기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은 저조한 실정임.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하에서는 다양한 사업체가 세대를 넘어 영속적으로 성장하는 장수기업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속 및 증여시 최대주주의 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20%를 할증 평가하여 과세하는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업종을 모든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한 장수기업 육성과 고용 안정 및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18조의2제1항, 제63조제3항).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

(박성훈의원안)

현 행	개정안								
☐ 가업상속공제(제18조의2) ○ 대상 가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이상은 제외) * 대통령령: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 공제금액 및 공제한도 - 피상속인과 상속인 요건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한도 내 가업상속재산가액¹⁾의 100% 금액을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업영위기간</th><th>공제한도</th></tr> </thead> <tbody> <tr> <td>10년 이상 ~ 20년 미만</td><td>300억원</td></tr> <tr> <td>20년 이상 ~ 30년 미만</td><td>400억원</td></tr> <tr> <td>30년 이상</td><td>600억원</td></tr> </tbody> </table>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의 규제 방식 전환 ○ 대상 가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이상은 제외) ○ (현행과 같음)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년 이상 ~ 20년 미만	300억원								
20년 이상 ~ 30년 미만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 박성훈의원안 2024. 10. 17. 발의(의안번호 4741)

☐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공제가 가능한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지티브(Positive) 규제 방식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업종에 대하여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으로 인정하되, 적

1)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용 자산가액 - 사업용부채가액
 법인기업의 경우: 주식등 가액×(1-법인의 총자산가액중 사업무관자산이 차지하는 비율)

용 제외 업종만 별도로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 현행법²⁾은 중소·중견기업의 장기간 축적된 기술·경영 노하우의 안정적 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가업을 상속한 경우 일정한 가업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가업상속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의 대상이 되는 ‘가업’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직전 3개 연도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 제외)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가업의 대상이 되는 업종에 관하여는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³⁾에서는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⑧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가업의 경영과 관련하여 조세포탈 또는 회계부정 행위(「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1항 또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른 죄를 범하는 것을 말하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 중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제18조의3에서 같다)로 정역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76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율의 결정이 있기 전에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할 것
2.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에 상속인에 대한 형이 확정된 경우: 가업상속공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할 것.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사업으로 영위할 것'을 요건으로 명시하고, 별표에서는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 업종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 <개정 2023. 2. 28.>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는 중소·중견기업의 해당업종(제15조제1항 및 제2항 관련)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

표준산업분류상 구분	가업 해당 업종
가. 농업, 임업 및 어업 (01 ~ 03)	작물재배업(011) 중 종자 및 묘목생산업(01123)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 중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자산의 가액] ÷ (제15조제7항에 따른 가업용 자산의 가액)
나. 광업(05 ~ 08)	광업 전체
(중 략)	
너.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96) 중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96993)

2. 개별법률의 규정에 따른 업종

가업 해당 업종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9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중 략)
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개정안은 이와 같이 적용 대상 업종을 열거하고 있는 현행의 포지

-
-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티브(Positive) 규제 방식을 적용 제외 업종을 규정하는 네거티브(Negative) 규제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다양한 업종의 기업체가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법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첫째, 가업공제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업종 혹은 신설된 업종이 법령의 미비점 혹은 경직성으로 별표에 규정되지 않아 가업상속 공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가령, 정부가 업력 30년 이상된 소상공인 및 소·중기업을 발굴하여 100년 이상 존속·성장할 수 있도록 육성하기 위해 지정한 ‘백년가게’임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⁴⁾된 바 있음. 해당 가게의 업종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별표1의 적용대상 업종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커피전문점’이기 때문임.

둘째, 가업상속공제 제도와 취지가 일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경우 대상 업종에 대해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도 고려할 수 있음.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는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 운영하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세대를 이어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4) 2024년 국정감사, 백년가게 강릉의 ‘테라로사’는 안 되고...서울 근교 ‘대형 베이커리카페’는 세금 깎아줘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⁵⁾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첫째, 가업공제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 공제혜택을 받게 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음.

개정안과 같이 적용제외 업종을 규정하려면 정부가 공제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되는 모든 업종을 법령에 일일이 열거하여야 하나, 모든 업종을 살살이 검토하여 적용제외 업종을 선별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공제 취지에 어긋나는 업종 중 일부가 법령에 열거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추후 공제적용 금지업종을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그 필요성에 대한 입증책임을 정부가 지게 되고 조세저항으로 개정이 쉽지 않기 때문임.

둘째, 중소벤처기업부의 명문장수기업 제도는 업종에 관하여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지만, 가업상속 공제제도보다 기간 요건(가업상속공제: 10년, 명문장수기업: 45년)이 엄격하고,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 브랜드가치 등 다양한 요소를 요건⁶⁾으로 하여

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4(명문장수기업의 요건) 명문장수기업은 건설업, 부동산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4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기업. 이 경우 사업 개시와 계속 유지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기업의 경제적·사회적 기여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네거티브 규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업상속
공제 제도와는 차이가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161

-
3. 기업의 브랜드 가치, 보유 특허의 수준, 제품의 우수성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4. 기업의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